

##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거래 관리방안(홈페이지)

2021.05.20

씨스퀘어자산운용(주) (이하 '당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사의 정보교류차단과 및 이해상충거래 관리 방안 내용을 공개합니다.

당사는 컴플라이언스 혹은 리스크관리 담당조직을 정보교류통제를 총괄하는 담당조직으로 지정하며, 준법감시인을 담당 임원 등으로 지정합니다.

### I.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로서 생산·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정보로서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정보
2.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에 대한 정보로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영업일이 지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 II.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과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의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2.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중 이해상충방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정보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에 따라 특정증권을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목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I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이해상충 관계	이해상충 유형	대응방안
회사(임직원) ↔ 고객	임직원의 금융상품투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편익 수취 의결권 행사 투자중개회사의 선정	준법감시인 앞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의결권행사기준 준수 투자중개업자선정기준 및 전 담중개업자서정기준 준수
고객 ↔ 고객	IPO, 블럭딜 등 다수의 집합투자기구의 통합 주문  집합투자기구간의 자산거래  신탁업자 및 판매사에 대한 정보제공	운용 담당 직원과 취득·처분 실행업무 담당 직원 분리 사전자산배분 사전거래세부기준 준수 및 준 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일정기간이 경과한 정보를 준 법감시인의 승인하에 제공

**V.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당사는 이해상충방지기준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씨스퀘어자산운용-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거래 관리방안(홈페이지)

1. 고객 이익 우선 / 고객 차별 금지
2. 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3. 이해상충문제의 파악 평가 관리
4.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